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희순 생활환경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도로 행정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(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)
- 띄어쓰기 정비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개정 배경 및 취지

- 현재 영등포구에는 문래창작촌, 전통시장, 영중로 등 주요 도로변에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, 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에서는 공공조형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,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용허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 - 한편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12호에서는 “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 -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, 해당 규정은 ‘공익성·안전성 확보’를 전제로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, 본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영등포구에는 매년 다양한 지역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,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무대·천막·안전관리대기소·단속초소 등과 더불어 교통초소, 주차관리초소,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공공조형물과 축제·행사 시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시설물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도로 내 설치 되는 공공조형물 및 행사시설의 합법적·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

- 안 제2조(정의)는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한 것으로,
 - 제5호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로서, 조형시설물(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 등)과 상징조형물(동상·탑·기념비 등)을 포함함.
 - 제6호는 교통안전·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의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, 설치 주체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지방공단·출자·출연기관으로 한정하여 공공성 및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
- 이처럼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확대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12호에 따라 ‘공익성 및 안전성 확보’를 전제한 경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제12호의 위임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설치·관리된 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
- 아울러 축제 및 행사 시 임시 설치되는 초소·무대 등 공익시설물 또한 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·운영함으로써 합법성 및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유지·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, 설치 목적·위치·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적정 규모로 조성·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659호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도로법 시행령」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도로 행정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(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)
- 나. 띄어쓰기 정비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3) 인권영향평가: 별도 의견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 10. 2.~10. 2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

6. 교통안전,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단·공사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.)

제10조 중 “**별표7**”을 “**별표 7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삭 제 2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 2 조 (도로점용허가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</p> <p>6. 교통안전,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단·공사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.)</p>
<p>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<u>별표7</u>의 기준에 따른다.</p>	<p>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별표 7</u>-----.</p>